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사·연구위원 채용 공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조사·연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동 채용은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채용하는 국가 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중심채용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분야의 능력을 갖춘 분들은 많이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2026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연번	채용분야	채용구분	근무예정지(소재지)	선발예정인원
1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	기간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세종시 반곡동 소재)	1명

2. 근무조건

가. 근로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나. 근무기간 및 보수수준

연번	채용분야	채용구분	근무기간	보수수준(월 기준)
1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	기간제	'26.7월부터 '27.12월까지	2,979,600원 (기타 보수직 "단" 등급 기준) 2,596,900원 (기타 보수직 "라" 등급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은 휴직자 조기 복직 등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3. 담당직무(NCS기반 채용직무 설명자료)

채용 분야	산업재해 예방 조사·연구위원 (산업보건 분야 전문가)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23. 환경·에너지	06. 산업안전	02. 산업보건관리	01. 산업보건관리 02 근로자 작업환경관리
직업 기초 능력	공직관(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조사·연구 위원	핵심직무	■ 직업건강증진 관련 정책 및 제도 운영 ■ 직무스트레스, 고객의 폭언 등 정신건강장해 예방 및 보호 ■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직무수행 내용	■ (정신건강장해 예방) 직무스트레스, 고객의 폭언(고객응대근로자 보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건강장해 예방 정책 수립·시행 지원,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및 사업장 적용 지침 등 마련 ■ (근골격계질환 예방)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정책 및 사업 수행 지원 ■ 기타 직업건강증진팀 소관 업무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산업 보건 관련 업무		
	필요지식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지식 ■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지식 ■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등 작업심리 및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지식 ■ 인간공학 및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평가에 관한 지식		
	필요기술	■ 업무 이해 능력 및 의사 표현 능력 ■ 필요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 OA 활용 및 문서 작성 능력 ■ 공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식 ■ 관련 자료, 통계,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해석 기술		
	직무수행 태도	■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 고객 중심적인 사고 및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탐구하는 태도 ■ 각종 법령 및 정보 수집을 통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태도 ■ 대인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및 제도 개선 의지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태도		
참고사이트		■ www.ncs.go.kr		

4. 응시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기본 요건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채용 결격 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3) 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인 경우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가능한 자
- 4)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별표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 조사·연구위원 채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다라 등급 요건>

등급	자격요건
“다” 등급	1.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로서 3년 이상 산업보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등급	1. 산업안전보건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관련학과 (산업재해통계분야포함)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6. 채용권자가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 및 경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산업안전보건분야'란 산업안전공학·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건축안전·토목안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물질관리·안전보건 관리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분야·그 밖에 필요한 분야를 말한다.

나. 우대 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장애인(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 이외), 가정부양책임자, 저소득층, 국가 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 및 자체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5. 시험 방법 [서류전형→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면접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2026. 5. 22.(금) 09:00 ~ 2026. 6. 2.(화)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6. 6. 5.(금)
- 면접시험: ▲고용노동부(세종시 소재): 2026. 6. 12.(금) 예정(세부 장소는 추후 통보)
 - * 지원자 현황 등 상황에 따라 면접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서류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및 심층면접 실시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6. 19.(금) 예정
 - * 면접시험 일정 변경시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면접 합격자는 별도로 유선 통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공고란에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22.(금) 09:00 ~ 2026. 6. 2.(화) 18:00
- 접수처
 - **(방문·등기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4층
직업건강증진팀 “전문위원 채용” 담당(우편번호 30148)
 - **(전자우편)** changil34@korea.kr
-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 접수(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12:00~13:00 제외)에만 가능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겔봉투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
 - 전자우편접수는 메일 제목에 “응시원서 제출”이라고 표기

8. 응시자 제출 서류

- ① 입사지원서(별지 서식 1호) 1부
- ②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2호) 1부
- ③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3호) 1부
-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서식 4호) 1부
- ⑤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서식 5호) 1부
- ⑥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서식 6호) 1부
- ⑦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 ⑧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⑨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⑩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⑪ 직무관련 교육 수료 이수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⑫ 장애인 증명서 1부(장애인 제한경쟁 응시자에 한함)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자료
- ⑬ 우대조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9.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채용분야 직무수행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무수행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산업보건분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형 문제 제시를 통해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면접시험 이후 필요 시 심층면접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채용유예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는 제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식6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전자서류 제출 시 예외)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예정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사 지 원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 글		생 년 월 일		(만 세)
		한 자		병 역 사 항		군필, 미필, 면제
	주 소					
	전 화			휴대폰		
	E-mail					
직무 관련 경력	기 간		소속조직	근무부서	직위(급)	담 당 업 무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직무 관련 자격	취득년월일		자 격 증			발 행 처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직무 관련 교육 사항	교육수료년월일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관
	년 월 일					
	년 월 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 경력·자격·교육사항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이용 가능
- * 교육사항·경력·자격 등 기재시 반드시 연월일을 기재
- * 교육사항은 직업교육, 기타교육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 기재

자 기 소 개 서

[경력활동]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또는 경력사항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세요.(1,000자 이내) 단, 경력이 없고 학위만 있는 지원자의 경우 직무관련 교육사항 및 기타 활동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세요.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업무전문성] 지원분야와 관련되어 자신의 경험 중 경쟁력 있는 장점에 대해 기술하세요.(300자 이내)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의사소통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소통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도록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면 기술세요.(300자 이내)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문제해결능력] 소속된 조직 및 단체생활 중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세요.(300자 이내)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조직이해능력] 기타 업무와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세요.(300자 이내)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2026. . .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기술하여 주시고 이 중 산재 사고(사고, 질병)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산재 사망(사고, 질병) 감축을 위해 귀하께서 지원한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방안과 아이디어 등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최근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000자 이내)

※ 인적사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할 것

2026.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분량은 A4 용지 3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직장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서 류 (응시자 성명 :)
응시원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이 력 서	성명, 생년월일, e-mail, SNS, 학력, 자격증명, 경력, 수상경력
자기소개서	성명, 생년월일
기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업무실적 증빙자료,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안내>

- (수집 · 이용목적) 채용 심사에는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주소, 전화번호, 자격증명, 경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초수급 등), 자기소개서, 경력(재직)증명서, 업무실적 증빙자료,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 (보유 · 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 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
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귀하

<서식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u> 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 <u>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u>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 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 3. 29. 제14145호로) 시행('16. 9. 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u>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u>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지원자

(서명 또는 인)

<서식 7: 필요시 제출>

응시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응시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귀하